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모바일서비스 관리지침 개정 및 배포 알림

1. 관련근거

가. 전자정부법 제 16조(전자정부서비스 개발·제공)

나. (구)서울메트로 정보관리처-2471호('14.05.20.) 「모바일서비스 관리지침 배포」

다. 정보보안처-1472호('17.05.20.) 「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·운영시 필수 조치사항
알림」

라.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-13747호('17.08.26.) 「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
개정(안)시행 알림」

마. IT개발처-1150호('17.10.31.) 「모바일서비스 관리지침 개정 보고」

2. 위 호와 관련, 모바일 서비스 표준체계 정립 및 보안성 확보에 관한 『모바일서비스
관리지침』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**동 지침을 준수하여 모바일 업무를 추진하
시기 바랍니다.**

가. 일시 : 2017년 11월 1일

나. 모바일서비스 관리지침 배포 목적

- 중복구축방지, 효율적인 서비스 『등록→검증→배포→관리체계』 정립
-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표준 체계 수립
- 모바일 전자정부 가이드라인 준용에 따른 보안성 확보
- 개인정보 유출, 노출, 훼손 등 침해사고 예방

다. 모바일서비스 절차



라. 주의사항

- 전자정부법, 개인정보보호법, 모바일서비스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
업무 관련 앱은 즉시 삭제
- 정보화주관부서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업무관련 앱은 즉시 삭제
- 업무관련 앱 개발 및 운영 시 모바일서비스 절차 반드시 준수
-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상위 기관의 규정을 따름

붙임 : 모바일서비스 관리지침서 개정 1부. 끝.

IT 전략실

수신자 가1~가53, 나1-2, 다1, 마27, 아1-3, 나1-아19, 나1-아19, 자1-자5

주임 **이슬아**

부장 **차미**

처장 **김정만**

실장 전결 11/03
권지원

협조자

시행 IT개발처-1183 (2017.11.03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6311-9378 전송 / leeseula@seoulmetro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